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22. 12. 30.>

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

회사명	업종	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

일련번호	성명	생년월일	입사일	직위	기술자격 및 학력			분야 및 기술등급	교육훈련	
					자격 종목/등급 및 학과	합격일 및 졸업일	등록번호 및 학위		교육기간	과정명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수탁기관의 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)]